

강남구공고 제2020 - 1914호

도시관리계획(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61호(2016. 8. 25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강남구 개포동 176-2번지 외 1개 필지의 공동개발을 위한 주민제안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15일

강 남 구 청 장

1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2. 열람장소 : 강남구청 도시계획과(강남구청 제1별관 3층 ☎ 02-3423-6114)
3. 도시관리계획(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 - 나. 용도지역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 - 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
 - 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
 - 가) 최대개발규모 계획
 - 기정

구 분		최대개발규모	비고
일반상업지역	삼성로변, 개포동길변	-	
	이면부	2,000m ²	
일반주거지역	공동주택단지	-	
	남부순환도로변 상업업무필지	4,000m ²	
	기타 내부필지	2,000m ²	

- ※ 최대개발규모가 없는 지역은 가구단위를 최대개발규모로 함
- ※ 기존 획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와 아파트단지 제외
- ※ 획지 간 공동개발은 그 획지가 속한 가구의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공동개발 가능
- ※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차량동선·보행동선·공지의 위치 등에 관한 계획사항의 변경이 연동될 경우 해당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에 권한이 있는 기관(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, 구 도시계획위원회)에서 결정함
- ※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(획지)를 합병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(획지)의 규정을 적용

- 변경

구 분		최대개발규모	비고
일반상업지역	삼성로변, 개포동길변	-	
	이면부	2,000㎡	
일반주거지역	공동주택단지	-	
	남부순환도로변 상업업무필지	4,000㎡	
	기타 내부필지	2,000㎡	

※ 최대개발규모가 없는 지역은 가구단위를 최대개발규모로 함

※ 기존 획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, 공동개발계획(지정)이 수립된 필지와 아파트단지 제외

※ 획지 간 공동개발은 그 획지가 속한 가구의 최대개발규모 범위 내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발적 공동개발 가능

※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차량동선·보행동선·공지의 위치 등에 관한 계획사항의 변경이 연동될 경우 해당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에 권한이 있는 기관(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, 구 도시계획위원회)에서 결정함

※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 이상의 대지(획지)를 합병할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대지(획지)의 규정을 적용

나) 가구 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다) 공동개발 계획

- 지정 : 없음

- 변경

구 분	동명	지번	면적		비고
공동개발 지정	개포동	176 - 2	2,418.9㎡	2,775.6㎡	맹지
	개포동	176 - 6	356.7㎡		부정형, 세장형 필지

2) 건축물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3)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 : 게재생략

4. 관련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). 끝.